

영등포구의회  
제12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2007. 3. 26



行 政 委 員 會

(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김 완 섭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1 제안자 및 제출경과

- 제안자 : 영등포구청장
- 발의일 : 2007년 3월 21일
- 회부일 : 2007년 3월 21일

##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검토보고,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행하는 별정직 전문위원 6급상당을 신설 하고, 일반적으로 전환된 일부 별정직명을 삭제 하는 등 관련 조례 를 개정하고자 함

**3****주요내용**

가. 체육지도사 및 영양사 임용자격기준 개정

- (별표1) 5. 행정관리분야, 7, 위생분야

나. 구의회 관련분야 임용자격기준 개정

- 6급(상당)직 이하의 구의회 전문위원을 신설함에 따라 임용자격 기준 마련 (별표1) 6. 구의회 관련분야

나. 일반직으로 전환된 부녀(가정복지)상담원의 신규임용 연령기준 삭제 (안 제4조제4항)

-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제한 기준 중 부녀(가정복지)상담원 분야의 직명 폐지로 단서조항 삭제

다. 일부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별정직명 삭제

- (별표1) 2. 부녀청소년, 아동복지분야
  3. 사회복지분야
  4. 위험물취급분야
  5. 행정관리분야 중 공과금요원
  7. 기타분야는 일반직으로 전환된 별정직명을 삭제 함

**4****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제2항
-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규칙
-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72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입법예고 : 2007. 3. 12 ~ 3. 19(7일 간)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5

###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6월 29일 개정공포 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6. 7. 1 시행, 2007. 6. 30일 까지 동 규정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함)에 의하여

구의회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그 밖에 소 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의 업무를 행하는 전문인력 보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인력보강은 타당 하다고 판단되며

전문위원이 5급 2명에서 6급 이하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 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어 6급상당 별정직 2명을 증원 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 중 일반직 전환에 따른 “구청 가정복지 과장”, “사회복지전문요원” 등의 분야와 현실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여성복지상담원”, “가정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훈련 교사”, “가스안전계장”, “고압가스관리기사”, “공과금요원” “광고물관 리원” 등의 분야를 삭제하고,

구의회 관련분야 별정직6급상당, 7급상당과 구분청 위생분야의 영양사 7급상당 규정을 신설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전문위원의 직무내용을 지방자치법 제51조의2 법문에 따라 수정하고 구의회 전문위원 7급상당은 6급상당을 신설하여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 의견이며

[별표 1] 의 도표 내 “직명(위) 및 업무구분”을 “직명(위) 및 업무분야”로의 개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고 다른 부분과의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현행대로 “직명(위) 및 업무구분”으로 수정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수정의견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 3. 26

보고자 : 김 완 섭

붙 임 : 1. 수정의견대비표  
2. 관련법령

# 〈수정의견대비표〉

## 6. 구의회 관련분야

현행				개정안					수정안				
직명(위) 및 업무구분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근거	직명(위) 및 업무분야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근거	직명(위) 및 업무구분	직급	직무내용	근거
구의회 전문위원	5급상당	의안 심의 및 의사 진행보좌	(생략)		구의회 전문위원	5급상당	의안 심의 및 검토 보고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기타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안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에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 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	
			<신설>		구의회 전문위원	6급상당	의안 심의 및 검토 보고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에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 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	

							7. 기타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신 설>		<u>구의회</u> <u>전문위원</u>	7급 상당	<u>의안 심의</u> 및 <u>검토 보고</u>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2.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기타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삭 제>	<삭 제>	<삭 제>
속기사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생 략)	(생 략)		(현행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 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 < 관련법령 >

### □ 지방자치법

제51조의2 (전문위원) ①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에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행한다.

③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제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 게 위임하여야 한다. <改正 1994·3·16, 2006.4.28>

부칙<제7935호,2006.4.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3·제41조제3항·제50조 제2항·제51조의2·제83조제2항 및 제10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개정 2006.6.29>) ①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시·도의 의회사무처, 시·군·구의 의회사무국 또는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시·도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 및 시·군·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는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06.6.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속위원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처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1998.8.31>

④시·도 및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1999.9.9, 2000.12.30> [본조신설 1997.2.4]

부칙 <제19565호,2006.6.29>

-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그 정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③(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5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의회사무기구 및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2007년 6월 30일까지 동 규정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5의2] <신설 2006.6.29>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제10조의3제2항관련)

## 2. 시·군·자치구

지방의원의 정수	전 문 위 원		
	총 정수	5급	6급 이하
7명	2명 이내	1명	1명
9명 이하	2명 이내	2명	
15명 이하	3명 이내	2명	1명
20명 이하	4명 이내	2명	2명
25명 이하	5명 이내	3명	2명
30명 이하	6명 이내	3명	3명
31명 이상	7명 이내	4명	3명

### 비 고

- 1. 위 표 중 총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 2.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다.
- 3.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 정수의 범위 안에서 직급 간 상호 조정이 가능하나 5급의 정원은 위 표의 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